
이의 재결 후 옴브즈만 시정권고와 행정소송

1 질의

가.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의재결을 거쳐 보수비 등을 보상 완료 (공탁) 한 이후, 시민감사옴브즈만의 감사결과에 따라 건축물 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비용 및 건축 설계비를 보수비에 포함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나. 위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결과 기보상한 산출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추가보상 가능 여부와 그 절차 및 방법은?

다. 이의재결을 거쳐 공탁이 완료된 이후 철거되는 건축물 등이 저평가 되었다는 민원 제기 및 시민옴브즈만의 시정권고에 따라 추가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의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 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 등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과 관련한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심리 등을 거쳐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이나 감사 결과의 수용여부는 귀 기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2.23. 토지정책과-967]